

제 1228호
1985.12.1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업무국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: 735-3337

계	분도개발	행정	공보관	공람
200	100	100	100	100

시보

차 례

◎ 고 사

제 852 호 : 주택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3
제 853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3
제 854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주차장) 결정·변경결정 및 지적승인	4
제 855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변경결정	4
제 85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하천, 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	5
제 857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에 따른 면적정정	6
제 858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	7
제 859 호 : 을지로 2 가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7
제 860 호 :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	8

(이면계속)

공										
합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009

제 861 호 : 을지로1가구역제 5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8
제 862 호 :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시행변경 (시행면적변경) 허가	9

◎ 공 고

제 749 호 : 마포로제 1 구역제 8 지구재개발사업완료	10
제 750 호 : 마포로제 1 구역제 50 지구재개발사업완료	10
제 751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시행인가를 위한공람	11
제 752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15
제 75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 및 하수도) 실시계획공람	15
제 754 호 : 사회복지법인인가취소예고	16
제 755 호 : 도시공원시설 (정구장) 관리위탁	17
제 757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	17
제 758 호 :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공람	17
제 759 호 : 공원시설설치허가	18

◎ 구청공고

관악구제 71 호 : 동판인개각사용승인	19
동대문구제 76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의시공업행정처분	21
시대문구제 79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	21

◎ 사 령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2 호

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470 호 (73.12.1)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 호 (84.4.20) 로 주택개량 사업 시행 인가된 청운 제 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있습니다.

1985. 12. 16.
서울특별시 장

가. 재개발사업의명칭 : 청운 제 1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

가. 지적승인 고시내역

순위	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 집	중 집	비고
1	신설	소로	1	10	77	해로 2 류 27 호	돌현동 295	
2	"	"	1	10	76	"	" 229-2	
3	"	"	2	8	125	"	자곡동 218-1	
4	"	"	2	8	550	"	" 420	

나. 도면 및 조서별첨 (생략)

- 나. 시행구역및면적 : 청운 제 1 구역 15,239.20 평방미터
- 다. 시행자 : 청운 제 1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 증 성
- 라. 시행기간 : 당초 : 84.4.20-85.12.31
변경 : 84.4.20-87. 6.30
- 카. 사업인가관계도서 : 별첨 (선략)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3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4 호 (85.12.7) 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19.
서울특별시 장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4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주차장) 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, 주차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, 제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,</p> <p>○ 시설조서 (주차장)</p>		<p>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라고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,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5.12.19. 서울특별시장</p>		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변경	주차장	서대문구 미군동 209일대	16,566㎡	
	"	"	0	해제
○ 시설조서 (공용의청사)				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서대문구 미군동 209일대	16,566㎡	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5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및변경결정</p> <p>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</p>		<p>되었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5.12.19. 서울특별시장</p>		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	비 고	
			기 정	변 경		
신 설	학 교	강남구 수서동 305 일대	-	13,266	감) 3,434 ㎡ 감) 5,327 ㎡	
변 경	"	강서구 공항동 4-148 일대	23,830	20,396		
"	"	도봉구 중계동 118 일대	22,777	17,450		
* 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.		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6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하천, 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</p> <p>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하천, 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,</p>			<p>제 7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제도면은 관악,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</p> <p>1985.12.17. 서울특별시장</p>			
○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결정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구 모	비 고		
신 설	하수도	도림교-서울대학교입구간	B=1-3.3m L=8,660m			
○ 도시계획시설 (하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구 모	비 고		
기 정	하 천	우이동-중량천 합류점	B=40-100m L=8,320m			
변 경	"	"		일부 구간 복원속소 (월계동51의4-48의7간)		

○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1	13	35	12,000	용두동	경기도 강지리	
변경	"	"	"	"	"	"	"	월계동 42의 3→ 47 의 8 (1. = 160m) 일대 폭원축소 및 확장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7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
승인에 따른 면적정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(82.2.
3) 로 결정 및 동고시 제 341 호
(82.8.20) 로 지적승인된 다음 도
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, 도시제

획선 지적분할 확정에 따라 면적정
정되었기,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
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
적승인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의 면
적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한
다.

1985.12.17.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당 초	정 정	
신설	학 교	궁동 245 일대	12,347	11,406	지적분할확정에 따른면적감소 (941)
"	"	궁동 241-1 일대	12,836	12,013.6	" (822.4)

나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8 호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12. 17
 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사업

2. 사업주체 : 강남구방배동 518
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
 사원주택조합
 대표 박 상 진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 가. 위 치 : 성동구마장동 784 의 42
 필지 (증 18 필지)
 나. 대지면적 : 36,536.6㎡ (증 12,425.51㎡)
 다. 규 모 : 아파트 13, 15 층 9 동
 811 세대 (증 아파트 3 동 331 세대
 상 가 3 층 1 동 및
 부대 복리시설비

4. 사업기간 : 85.8 - 86.12.31

5.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(배치 및 신설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확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고
기정 변경	소로	2	2	8 m	210 m	마장동 785-1	마장동 788-2	배치
	"	"	"	"	116	" 786-1	"	
기정 변경 신설	"	3	1	6 m	142 m	마장동 787-8	마장동 788-3	배치
	"	"	1	4 m	198 m	마장동 789-1	마장동 382-1	
"	"	"	2	"	10.5 m	마장동 383	마장동 381-6	"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9 호
울지로 2 가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변경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2 호 (79.7.24) 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고시 제 340 호 (85.5.22) 로 변경인가된 울

지로 2 가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 조,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 12. 18
 서울특별시 장

<p>가. 변경인가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기간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변경전 : 79.7.24 - 85.12.31 변경 : 79.7.24 - 86.6.30 나. 변경사유 : 시행지구내 토지전물의 수용재결 및 행정대침행 지연등으로 사업시행기간 지연 다. 기타사항 : 금회 변경전 인가 내용과 동일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0 호</p> <p>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</p> <p>1. 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을지로1가</p>	<p>구역제 5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제 5 조, 동법시행령 제 5 조 및 제 5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제 6 조에 의거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12. 18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			
<p>가.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 조서 (을지로1가구역)</p>						
구분	지구명	대지면적	건 배 율	용 적 율	층 수	주 용 도
기정	제 5 지구	5,085	39.02%이하	670%이하	21/5	업무 및 근린생활시설
변경	"	5,169.8	32-35%	640-642.7%	21/6	업무 및 관매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1 호</p> <p>을지로 1 가구역 제 5 지구재 개발 사업 시행 변경 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13 호 (82.10.14)로 제 3 개발자 지정되고, 동고시 제 270 호 (83.5.16)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을지로 1 가구역제 5 지구에</p>	<p>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33 조,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33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12. 18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			

가. 변경인가내용		
구 분	기 정	변 경
1) 사업의 명칭	을지로1가구역제5지구 재개발사업	변경없음
2) 시행구역	중구을지로1가97-2번지일대(40필지)	·
3) 시행면적	5,627 ㎡	·
4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중구을지로1가50번지	·
5) 시행기간	83.5.16 - 87.11.17	·
6) 시행인가년월일	83. 5. 16	84.12 변경인가
7) 시행자의 주소, 성명	인국화재해상보험(주) 대표 손 경 식	변경없음
8) 건축계획 (건축허가로 확정함)		
대 지 면 적	5,169.8 ㎡	5,169.8 ㎡
건 제 율	31.4 %	32-33 %
용 적 율	631.8 %	640-642.7 %
층 수	21/5	21/6
주 용 도	업무시설 (부속용도: 판매시설)	변경없음
9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부: 변경없음		
<p>나. 변경사유: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일부 조정</p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2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시행변경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1 호 ('84. 4.23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제 179 호 ('85.3.18)에 의거 도시계획사업</p> <p>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711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시행을 경하고 이를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인료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12. 19 서울특별시장</p>		

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상계동 711
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
 (가스공급설비)
 다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
 영등포구여의도동 25-11 한일개발(주)
 대표이사 태 창 희
 라. 사업시행면적
 (1) 당초 : 49,587㎡
 (2) 변경 : 48,495㎡ (1,092㎡감)
 마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(생략)
 바. 기타사항 : 변경없음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49 호

마포로제1구역 제 8 지구재개발사업완료

서울특별시 고시제 287 호 (84.5.17)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마포로제 1 구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12. 16
 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1. 사업명 : 마포로제 1 구역 제 8 지구재개발사업

2. 시행구역 : 마포구도화동 51-1 외 6필지
 3. 시행면적 : 2,528.6㎡
 4. 시행자 주소 및 성명
 ○사무소소재지 : 마포구도화동 538 번지
 ○성 명 : (주)성지건설
 대표 김 홍 식
 5. 완료내역
 가. 대 지 : 1,744.1㎡
 나. 공공용지 : 784.5㎡
 다. 건축시설
 ○건축면적 : 801.19㎡ (건폐율: 45.5%)
 ○연 면 적 : 18,031.24㎡ (용적율: 637%)
 ○층 수 : 지상 16 층, 지하 4 층
 ○용 도 :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0 호

마포로제 1 구역 제 50 지구 재 개발 사업 완료 공 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24 호 (83.6.28)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마포로제 1 구역 제 50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12. 16
 서울특별시 장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1. 사업명 : 마포로제 1구역제 50지구제 개발사업</p> <p>2. 시행구역 : 마포구 공덕동 256-13번지 일대</p> <p>3. 시행면적 : 2,641.6㎡</p> <p>4. 시행자 주소 및 성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소소재지 : 영등포구 여의도동 44-35 ○ 성 명 : (주)에리트 대표 정 성 모 <p>5. 완료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대 지 : 2,311.2㎡ 나. 공공용지 : 330.4㎡ 다. 건축시설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면적 : 1,035.88㎡ (전체율 : 44.8%) ○ 연 면 적 : 23,382.24㎡ (용적율 : 663.7%) ○ 층 수 : 지상 16층, 지하 5층 ○ 용 도 : 업무시설 및 판매, 근린생활, 위락시설 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1 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사업 (공공의청사)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847 호 (85.12.13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공공의청사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인가키 위해 도시</p>	<p>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제 6조에 의거 공람공고로써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 ○ 공람기간 : 1985.12.19-1986.1.1 (14일간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12.19 서울특별시장</p> <p>공사개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장위치 : 중구신당동193-29외10필지 2. 사업장의 종류와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공의청사 시행인가) 3. 사업의규모 - 대지면적 : 24,842.5㎡ 건물연면적 : 19,650.1㎡ 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5.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: 별첨 6. 사업 시행자 :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7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로부터 87.12.31 8.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: 생략 9. 관계도면 : 생략
---	--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				
소재지	지목	지적	토지소유자	소유권이외의권리
신당 193-5	대	436	임 동 옥	매매계약 : 남 호 영
193-6	대	99	김 원 길	근저당권자 : 중소기업은행
193-7	대	288	김 원 길	근저당권자 : 중소기업은행
193-28	대	99	김 익 순	
193-29	대	22,318	국 (전 매 청)	
193-38	대	33	국 (전 매 청)	
210	대	268	김 익 신	
211-1	대	208	김 익 신	
212-2	대	208	김성분, 강명신	
홍인동 159-4	대	442.5	국 (전 매 청)	
계	12 필	24,842.5		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											
소재지	용도	구조	면적(실제) (㎡)	가옥대장(공부상)					무허가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				구조	용도	면적(㎡)	소유자	소유권이의 권리			
신당동 193-5	점포	목조/ 스레트	61	목조/ 와습	주택	49.12	임동욱	가등기: 남호명	11.88	임동욱	계 1228 호 시 보 1985.12.16 22-13
신당동 193-5	공장	목조/ 스레트	369	목조/ 도단와습	공장	309.36	"		59.64	"	
신당동 193-28	점포	목조/ 스레트	24						96	김익순	
	점포, 주택	목조/ 스레트 철근, 평목	72							"	
신당동 193-6	공장	목조/ 스레트	99	목조/ 와습	공장	24.56	김원길	근저당권자: 웅스기업은행 (성동지점)	74.44	김원길	
신당동 193-7	공장	"	166	"	공장	59.50	김원길	"	106.50	"	
	"	철근평목 및스레트	49 (1층) 49 (2층)	"	창고	49.12	김원길		48.88	"	

소재지	용도	구조	면적(실제) (㎡)	가옥대차(공부상)					무허가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				구조	용도	면적(㎡)	소유자	소유권이외 의 권리			
신당동 193-7	주택	스레트	66	목조/외층	주택					김성분	
신당동 212-1											
신당동 212-1	"	목조/ 스레트	24	"	"	56.98	김익신		126.06	"	
신당동 212-1	"	"	84	"	"	4.96	"			"	
신당동 212-1	"	"	16	"	"					"	
신당동 212-2	공장	"	114	목조/외층	주택	60.03	김성분 외 1인		143.01	김익신	
"	"	"	94			4.96				"	
신당동 211-1	공장	"	93	목조/외층	주택	1층 228.10	김익신			김익신	
신당동 211-1	공장	"	126	"	주택	2층 13.22				"	
신당동 211-1	"	"	14						188.83	"	
신당동 210	공장	"	228 (1층)	목조/외층	주택	1층 136.53				"	
신당동 211-1	창고	목조/ 세와	53 (2층)		공장	2층 16.53				"	
신당동 210	공장	목조/ 스레트	6				김익신			"	
신당동 210	공장	"	38	목조/ 스레트	주택	69.79	"			"	
"	"	"	95				"			"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2 호

도시계획사업(소로) 실시계획
공 랑 공 고

1. 서고 제 106('74.8.1)호로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공고한다.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.

1985.12.17

서울특별시 장

- 공 랑 개 요 -

- 1) 사업의 시행지 : 서대문구 홍제동 280의 2에서 3의 77 간
- 2)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도로개설 및 하수도시설
- 3) 사업의 규모 : 도로개설
B = 6-8미터 L = 327미터
하수도(450%) L = 120미터
- 4)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 장
(서대문구청장)
- 5) 사업기간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'86.12.31일까지
- 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

소재지, 지번, 지목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7) 보상계획

- 가. 대상건물 : 별첨
- 나. 보상시기 : '86.1-'86.12
- 다. 보상절차
 - 감정평가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 후 취득
 -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조 2항 및 제 77조 제 외거 강제수용
- 라. 보상지급방법
 - 토지 :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
 - 건물 : 계약후 70%월거완료후 전액지급

8) 관계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3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및하수도)
실시계획 공 랑 공 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호('69.1.18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24호('85.12.7)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31호('85.12.11)로 지적승인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록한다.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1985.12.17

서울특별시

- 공 랑 개 요 -

- 1. 사업의 시행지: 서대문구 홍은동 204의32에서 190의26간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로 및 하수도
- 3. 사업의 규모
 도로개설 B=8-10미터 L=361미터
 포 장 B=8-10미터 L=361미터
 하 수 도: 암거(3×2M) L=30미터
- 4. 사업기간: 실시인가일로부터 '86.12.31
- 5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 (서대문구청장)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자, 소유권의 의 권리명세: 별첨
- 7. 보상계획
 가. 대상물건: 별첨물건조서 참조
 나. 보상시기: '86.1-'86.12
 다. 보상절차
 •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
 •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77 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

라. 보상금 지급방법

- 토지: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
- 건물: 계약과 동시 70%, 철거 완료후 잔액 지급

마. 관계도면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4 호

사회복지법인인가취소예고

사회복지법인 구세원은 법인설립 인가일로 부터 10여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법인설립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및 민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가를 취소하고자 이에 공고한다.

1985.12.18

서울특별시

가. 법인현황

- 법인명: 사회복지법인 구세원
- 소재지: 동작구후석 2동87
- 대 표: 백 원 영
- 설립목적: 심신장애자 수용보호

나. 법인의 운영실태: 법인인가이후 사업실적이 없이 존속하고 있음.

다. 의견제출: 이 법인의 인가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은 '85.12.31 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5 호

공원시설(테니스장) 관리위탁

- 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 번지 장안평 근린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도시공원법 제 6 조 2 항에 의거관리 위탁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5.12.18

서울특별시
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 번지

나. 시설종류 및 명칭: 테니스장

다. 위탁관리자: 동대문구상봉동 127-39 번지 김응환

라. 시설할내역

- 테니스장코트 1면, 연습장 1면 954 ㎡
- 관리실: 관리사무실 1동 38.88 ㎡
- 창고 및 숙직실 1동 13.2 ㎡

마. 관리기간: '86.1.1-'86.12.31

바. 관계도면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7 호

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

- 1.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백계

교분(석촌, 방이교분) 구역 관련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 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동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도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보인다

-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노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

1985.12.17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명: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위치: 강동구 석촌동, 방이동 각 일부(석촌, 방이교분구역)

* (변경도서: 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8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에 따른 서류공람공고

- 1.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가스공급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

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
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
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
 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
 랍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
 가. 사업시행지

연료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
 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
 간내에 제출하기 바람.

1985.12.19
 서울특별시장

구 분	강 남	동 부	북 부
위 치	강남구대치동 27-1	성동구군자동 205-205	도봉구상계동 711번지 712번지의 3
비 고	서울시고시 제 41 호 ('78.2.11) 로 도시계획 시설 (가스공급설비) 결 정, 서울시고시 제 141 호 ('78.4.7) 지적승인	서울시고시 제 48 호 ('82.2.3) 로 도시계획 시설 (가스공급설비) 결 정 및 지적승인	서울시고시 제 211 호 ('84.4.23) 로 도시계획 시설 (가스공급설비) 결 정 및 지적승인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
 업 (가스공급설비)
 다. 사업시행자: 한국가스공사
 대표 문 회 성

라. 시행면적
 (1) 강 남: 2,402 m²
 (건축연면적 325.45 m²)
 (2) 동 부: 1,937.3 m²
 (건축연면적 281.45 m²)
 (3) 북 부: 1,092 m²
 (건축연면적 121.45 m²)
 마. 시행기간: 허가일 - '86.12.31
 바. 기 타: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
 연료과 (전화 731-6316-9)

에 문의 또는 서면제출 바란다.
 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9 호
 공원시설설치허가공고
 도시공원법 제 6조제 1 항 및 동법 시
 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
 설치허가하고, 동법 제 6조제 3 항의 규
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5.12.16
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용산구신계동 1의 57의 1필지
 나. 사업의종류 : 기념비건립성저조성
 다. 사업시행면적 : 1,948㎡
 라. 사업의규모 : 기념비 1개소설치 및 조경식재
 마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 1번지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수환
 바. 사업시행기간 : 1985.12.16 ~ 1986. 5.31
 사. 사업계획도면 : 별첨 (생략)

구 청 공 고

◎ 관악구공고제 71 호

동 관 인 개 각 사 용 승 인 공 고





우리구 봉천 제 1 동 의 6 개 동 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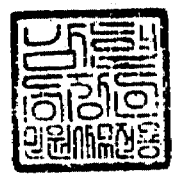








반사무용 직인 및 민원사무 전용 직인, 계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고, 구 관인 및 계인을 동일자로 폐기하였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.

1. 대상동 : 봉천제 1, 4, 9, 남현, 신림 7, 9, 11 동
2. 사용개시 : '85.12.16 (월) 09:00
3. 폐인일시 : '85.12.14 (토) 13.00
4. 관인의 인영 : 별첨

1985.12.15.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인 영				
공 인 명	봉천제 1 동직인 (민원사무전용)	봉천제 1 동제인 (민원사무전용)	봉천제 4 동직인 (민원사무전용)	봉천제 4 동제인 (민원사무전용)

인 영				
공인명	봉천제 9 동 직 인 (민원 사무 전용)	봉천제 9 동 계 인 (민원 사무 전용)	남 천 동 직 인 (민원 사무 전용)	남 천 동 계 인 (민원 사무 전용)
인 영				
공인명	신림 제 7 동 직 인 (민원 사무 전용)	신림 제 7 동 계 인 (민원 사무 전용)	신림 제 7 동 직 인 (일 반 사무 용)	
인 영				
공인명	신림 제 9 동 직 인 (민원 사무 전용)	신림 제 9 동 계 인 (민원 사무 전용)	신림 제 11 동 직 인 (민원 사무 전용)	신림 제 11 동 계 인 (민원 사무 전용)

◎동대문구청공고제 76 호
특정열사용기자재의시공업행정처분공고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27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시공업소에 대해 동법 제 30 조 제 1 항

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.

1985.12.16
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다 음

지정번호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사유	조치내용
141	대경건축설비	면목동 114-109	전양순	무단장소이전소재불명	지정취소
157	대호설비	답십리동 36-3	안기환	"	"
175	대성설비공사	면목동 175-85	이한익	"	"
181	동산기전(주)	용두동 255-71	윤병목	"	"
32	일성설비	망우동 513-53	신금규	기술요원미채용 시공정지미시정	"
127	승진설비	면목동 369-18	김양수	"	"
28	한국난방공사	면목동 626-9	김무홍	기술요원미채용	시공정지 2개월 85.12.1-86.1.31
98	극동설비	면목동 605-32	김상욱	"	"
120	동신설비	목동 180-17	최돈성	"	"
193	신일양행	장안동 412-1	권태문	"	"

◎서대문구청공고제 79 호
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

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를 지정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5.12.17.
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다 음						
지정번호	종별	업 소 명	대표자	소 재 지	사 유	조치내용
23	1	한국종합설비 엔지니어링	차상근	홍제동 299-5	대표자 무단승계	지정취소
75	2	현대난방	노홍숙	남가좌 291-39	무단이전	"
79	2	한양설비공사	김선근	남가좌 285-6	무단이전	"

사 령

◎ 1985년 12월 18일자

령제 456 호

성 명	발령부서	현부서	직 급
김종길	성동구	운영과	지방별정직 7급상당
정용진	영등포구	"	"
백창기	도봉구	종로구	"
이정립	은평구	중용산구	"
한해수	구로구	중용산동구	"
엄영국	서대문구	동대문구	"
정종수	용산구	"	"
김재기	용산구	성북구	"
최남수	종로구	성북구	"
김석두	중구	도봉구	"
이광열	영등포구	은명구	"
유연수	강서구	서대문구	"
천성수	강남구	강서구	"
김학진	동대문구	구로구	"
박수천	문영과	"	"
김조환	강동구	영등포구	"
백훈기	운영과	강남구	"
박상구	구로구	강동구	"
김진권	동대문구	영등포구	"

서울특별시